

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(안)

I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의 개정에 따른 「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」 개정 내용 반영

II. 개정배경

- (갑질금지)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
- (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)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

III. 주요내용

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(갑질행위) 의 금지 [제7조2]

-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|---|
| <신설> | 제1항 : 임직원 → 민원인 갑질 금지 제2항 : 임직원 → 부하 임직원 갑질 금지 제3항 : 공공기관 → 민원인 갑질 금지 제4항 : 상급기관 → 하급기관 갑질금지 제5항 :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포괄적·예비적 갑질금지 |

2 서식 변경 [제29조]

- 초과사례금 반환시 반환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식 변경
(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서식이 변경되어, 그에 따름)

3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[제31조2]

- 재단이 감독기관일 경우,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, 부당요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조항 신설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|---|
| <신설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항 : 감독기관의 임직원은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요구 금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.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의 요구 ▶ 제2항 :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요구에 대한 신고접수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|

4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조치 [제31조3]

- 재단이 피감기관일 경우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는 거부 및 보고 하며, 피감기관은 그 내용을 감독기관에게 알리는 조항을 신설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|--|
| <신설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항 : 피감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, 재차 요구 받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(감사실장)에게 보고 ▶ 제2항 : 보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, 이사장은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림 |

5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[제32조]

- 임직원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(감사실장)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신설된 행동기준을 추가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상 담 대 상 추 가 | 1. 알선·청탁 2. 금품등의 수수 3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4. 경조사의 통지 <신설> | 1.~4. (현행과 같음) 5.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6.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|

6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내용의 구체화 [제38조]

-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

| 현 행 | 개 정(안) |
|-------|---|
| <신 설> | ▶ 제38조 제3항 :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시 포함할 내용 1. 금품 등 수수금지 2. 알선·청탁등 금지 3.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4.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5. 기타 부패의 방지와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

Ⅲ. 시행일자 : 2019.6.17

【붙임】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입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· 후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-|---|
| <p>제 1 장 총 칙 제1조~제3조 (기재생략)</p> <p>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~제7조 (기재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 |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2 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·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.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3. 재단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재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. 재단에 소속된 기관에 재단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임직원, 재단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|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p> | <p>제31조의2 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 ① 재단이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 등을 하는 기관(이하 “감독기관”이라 한다)일 경우, 재단의 임직원은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 등을 받는 기관(이하 “피감기관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.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의 요구 <p>② 제1항의 내용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이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p> | <p>제31조의3 (부당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의 조치) ① 재단이 피감기관일 경우,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31조의2의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재단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,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31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</p> |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보 칙</p> <p>제38조(교육)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39조~제42조 (기재생략)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 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 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·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15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강령은 2019.6.17일로 부터 시행한다.</p> |